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6. . . (제 회)	

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
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정관 (산업통상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4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5년 9월 2일 「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」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에콰도르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에 추가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‘에콰도르공화국’을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추가(시행령제24조제1항에 반영)
- 나. ‘에콰도르공화국’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에 추가(시행령제24조제16항에 반영)
- 다. ‘에콰도르공화국’을 세이프가드조치의 재량적 적용 배제가 가능한 대상 국가에 추가(시행령제24조의2제1항에 반영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4. 14. ~ 2026. 5. 26.)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에콰도르공화국

제24조제16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에콰도르공화국

제24조의2제1항 중 “미합중국·인도공화국·페루공화국·콜롬비아공화국·호주·캐나다·뉴질랜드·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·이스라엘·인도네시아공화국 및 필리핀공화국”을 “미합중국·인도공화국·페루공화국·콜롬비아공화국·호주·캐나다·뉴질랜드·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·이스라엘·인도네시아공화국·필리핀공화국 및 에콰도르공화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「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」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) ① 법 제 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 협정세이프가드조치(이하 “자 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”라 한다)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 치(이하 “잠정자유무역협정세 이프가드조치”라 한다)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4조(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3. (생 략)	1. ~ 2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4. 에콰도르공화국</u>
② ~ ⑮ (생 략)	② ~ ⑮ (현행과 같음)
⑯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 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 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 다.	⑯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7. 에콰도르공화국</u>
제24조의2(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)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	제24조의2(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) ① ----- -----

의 대상국가는 <u>미합중국 · 인도공화국 · 페루공화국 · 콜롬비아공화국 · 호주 · 캐나다 · 뉴질랜드 ·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· 이스라엘 · 인도네시아공화국</u> 및 <u>필리핀공화국</u>(이하 이 조에서 “세이프가드조치적용배제대상국가”라 한다)으로 한다. ② · ③ (생략)	----- <u>미합중국 · 인도공화국 · 페루공화국 · 콜롬비아공화국 · 호주 · 캐나다 · 뉴질랜드 ·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· 이스라엘 · 인도네시아공화국 · 필리핀공화국</u> 및 <u>에콰도르공화국</u>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부 무역구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854